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3. 12.(목) 총 4매(본문 3)	
담당 부서 간선도로과	담 당 자	• 과장 이정기, 사무관 김강문, 주무관 노영수 • ☎ (044) 201-3888, 3907, 3893	
보 도 일 시	2020년 3월 1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월 12일(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길 어깨(갓길)에서 긴급구난차량 구난활동 안전해진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 개정·긴급구난차량의 안전시설설치 근거 마련

- 정부가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길어깨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 그 폭을 본선 차로폭과 동일하게 하는 등 구난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이하 도구시)」을 3월 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 그간 길어깨는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지난 18년 3월 길어깨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안전에는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 * 구조활동을 위해 길어깨에 정차한 소방차량을 25t트럭이 추돌하여 소방관 3명 순직(18.3월)
 - 또한,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정 차로폭,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비상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었다.

* 길어깨 사고는 고속국도 평균 치사율의 약 4.3배(도로교통공단, '19년)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구시를 개정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법령에서 확인가능

①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조 활동을 위한 시설설치 근거 마련(제12조)

- 운전자 부주의 또는 불법으로 길어깨에 진입할 경우 차량을 주행 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 돌출형 차선을 설치하고,
 - 긴급구난차량이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하거나 선형불량 구간을 사전에 인지하여 정차하지 않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②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 대한 차로폭 기준 마련(제12조의2)

-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길어깨폭은 주행차로와 동일한 폭으로 하고, 차량사고 등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 주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 또한, 운전자가 길어깨에 진입하기 전에 차로로 활용하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③ 교통정온화 시설(안심도로) 설치 기준의 근거 마련(제38조제3항)

- 보행자의 안전 확보, 차량의 속도 저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년 도입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④ 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로를 기능에 따라 구분(제3조 등)

-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하여 설계 중인 기존의 도로 구분 체계를 도로의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개선하고, 도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상위 기능의 도로로 설계할 수 있게 했다.

【 현 행 】			【 개 선 】		
도로의 구분		도로의 종류	도로의 구분	도로의 종류	
<u>고속도로</u>					
일반 도로	주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주간선도로	<u>고속국도</u> ,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 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	군도, 구도	국지도로	군도, 구도	

* (도구시 제3조제3항) 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도구시 개정을 통해 긴급구난 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도 본선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서울특별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김강문 사무관(☎ 044-201-39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구 분	개정 사유	개정 사항										
제2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과 같은 용어 사용(고속국도) -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수정, 신설 ·수정 : 고속도로⇒고속국도 일반도로(삭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신설 : 교통정온화시설 										
제3조 (도로의 기능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국도법(‘14.7, 폐지)을 도로법으로 통합함에 따른 도로의 구분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를 기능별로 구분 - 고속국도를 주간선도로에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도로의 기능별 구분</th> <th>도로의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주간선도로</td> <td>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td> </tr> <tr> <td>보조간선도로</td> <td>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td> </tr> <tr> <td>집산도로</td> <td>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td> </tr> <tr> <td>국지도로</td> <td>군도, 구도</td> </tr> </tbody> </table>	도로의 기능별 구분	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	군도, 구도
도로의 기능별 구분	도로의 종류											
주간선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	군도, 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종류를 규정하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건설 시 규제로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위 기능의 도로로 건설할 수 있도록 개정 										
제10·11· 12·14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구성, 기하구조 등에 대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속도에 따른 기준으로 일원화 										
제12조 (길어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난활동 및 유지관리 시 치사율 높은 추돌사고 빈번 - 고속국도 등의 지·정체 구간에서 길어깨를 주행차로로 활용하는 근거 불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난차량 등의 안전성 향상 위한 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 - 일시적 활용 시 길어깨의 폭, 비상주차대, 사전 인지를 위한 시설 설치 근거 마련 										
제38조(도로 안전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근거 마련 										